AUTHOR 신복윤

TITLE 교회의 대의정치: 개혁주의 신학의 한 특성

IN 신학정론
vol.24 no.1 (June,2006): 67-105

로 Bultmann의 실존적인 해석 원리는 그의 신학인생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파종과 결실에서 차이가 없다.

75) Bultmann, Das verkündigte Wort, 6: "Bei Gott ist unser Ziel und unsere Heimat".

교회의 대의정치: 개혁주의 신학의 한 특성

[신 복 윤 | 조직신학 · 명예총장]

Ⅰ. 장로주의
1. 장로주의의 성경적 근거 2. 개혁파 신학자들의 장로주의
Ⅱ. 개혁파, 혹은 장로파 정체의 근본원리
1. 영미 장로파의 정치원리 2. 화란 개혁파의 정치원리
3. 칼빈의 정치형태
Ⅲ. 교회의 정치
1. 교회의 직원들 2. 교회의 회의들

장로교 정체는 대의(代議)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이 정체에서는 신자들이 선거한 모든 직원들은 권위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이 정체는 치리장로(治理長老)를 대표자로 선택하여 그들과 목사가 함께 대의정치를 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정체는 교회정치가 단일 지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며, 한편 그것이 회중일반의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도 반대한다. 예를 들어, 감독이 주도하는 회의에 평신도 대표들을 참석시켜 대의정치의 편익을 도모하는 감독정체를 반대하는 동시에, 독립한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의정치의 편익을 도모하는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의 회중정체(會衆政体)도 아울러 반대한다. 그러므로 감독정체와 회중정체

의 중간에 서서 대의정치를 행하는 장로회정체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Ⅰ. 장로주의

'장로교인' (혹은 장로주의자, presbyterian, πρεσβυτέριον)이라는 말은 '장로'(elder, πρεσβύτερος)라는 말을 어근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장로교회는 장로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해설할 수 있다. 좀더 설명하자면, 장로교회는 선택받은 장로들에 의한 대의형태(代議形態)의 정치를 행하는 교회이다.

1. 장로주의의 성경적 근거

장로주의(長老主義, presbyterianism)의 기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에서 장로직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창 50:7; 출 3:16; 4:29,30; 12:21; 신 5:23; 시 107:32). 모세 시대에는 백성의 대표로 장로를 세워 백성의 소송을 처리하게 하였다(출 18:21~25; 민 11:16~25). 그때에 장로들은 백성의 통치자요 언약적 대표자였다. 장로들에 대한 기록은 사사시대, 열왕기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에도 보인다(삿 8:14; 삼상 16:4; 왕하 19:2). 장로들은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겔 8:1; 14:1; 20:1~2; 스 5:5,9; 6:7~8,14). 신구약 중간사는 회당에서 장로의 통치가 있었다고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도 '장로'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마 15:2; 막 7:3; 요 7:48; 막 5:22; 눅 8:41).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했으나, 유대인들이 장로의 직책을 폐지해야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들 성경의 언급들이 중요한 것은, 이 언급들이 신구약교회에서 정치의 연속성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구약과 복음서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정치에 대한 결정적인 배경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전의 성경 계시를 기초로 해서 세운 것뿐이다. 사도들은 교회직원에 대하여 언급할 때, 구약에서 발견되는 정치구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장로에 의한 정치는 단순히 신약교회 정치라고만 말할 수 없고, 넓게 말해서 그것은 성경적 교회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도시대에 와서 사도들은 복음전파의 결과로 설립된 여러 지역교회에 장로들을 세워 교회의 조직적인 정치를 시작하였다(행 14:23; 20:17; 딛 1:5). 디모데전서 3:1~7에는 장로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5:17에는 장로에 대한 대우가 지시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1~4에는 장로의 직무상 마땅히 가져야 할 정신과 태도가 묘사된다.

신약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다섯 번 발견되는데, 그것은 장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면담하면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행 20:17,28). 그는 또한 디도서 1:5,7에서, 각 성에 장로들을 장립하도록 명하면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하였다.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보면, '장로'와 '감독'은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장로, 혹은 감독의 직책은 처음에 유대인 교회에서 제정되고(약 5:14; 히 13:7,17).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도 제정되었을 것이다.

다른 몇 가지 명칭들이 이 직책에 적용되었는데, '치리자'(롬 12:8; 살전 5:12). '다스리는 것'(고전 12:8), '인도자'(히 13:7,17,24). 그리고 '목사'(엡 4:11) 등이다. 이 직원들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맡아 지키는 직무가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양무리를 먹이며, 치리하며, 보호하는 자들이었다.

디모데 전서 5:17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장로교회에 치리장로(治理長老)와 교훈하는 장로(목사)라는 이중(二重) 장로를 두는 제도의 중요한 근거이다.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도 칭하였다.

신약에서 교직에 등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적 권위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의 교회적 권위는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성령의 지도하에 행사되었다. "치리장로들은 목사들과 연합하여 정치와 권징을 시행할 목적으로 교인들의 선택을 받은 그들의 정당한 대표자들이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교회들은 대부분 이 직책이 성경에서 '치리하는 것과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칭호로 지시되었다고 이해한다."[1]

오늘날 목사와 치리장로는 여러 점에서 구분된다.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장립한다. 장로는 당회 관할 하에 있으나 목사는 노회 관할 하에 있다. 장로는 목사 장립 시에 목사에게 안수하지 못하며, 세례와 성찬을 베풀지 못한다.

명칭과 직무에서도 구분이 있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使者) 혹은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으로도 불리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만 불린다. 장로가 하는 일은 목사와 함께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며, 교인을 교육 또는 심방하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 목사가 없을 때에는 목사를 찾는 동안 노회와 협의하고, 주일마다 인도할 설교자를 청빙하며, 만일 청빙할 인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친히 인도한다.

신약의 장로들이 선택을 받아 취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맛디아를 선택할 때 회중이 참관하였으며(행 1:23~26),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회중이 주동이 되었다(행 6:3,5). 그러므로 그후 설립된 여러 지역교회

1)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5장.

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울 때에도 회중이 주동적 역할을 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도행전 14:23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택하여"라는 말은 '손을 들어 선택함'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 말은 안수에 의한 임직보다는 거수에 의한 선거를 의미할 것이다. 신약에서 장로들이 선택을 받아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대의정치(代議政治) 형식을 취하였다는 강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사도시대에 벌써 장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대회의(大會義)가 있었다.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 만일 그 교회가 독립교회였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큰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안디옥 교회 자체내에서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회의에 문제를 상정한 것은 , 그 회의가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오늘의 대회(大會)나 총회와 같은 대회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회의의 결정은 권위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같이 그것을 받아들였다(행 15:).

디모데 전서 4:14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라는 말씀 중에 "장로의 회"(πρεσβυτέριον)는 presbytery로 영역되어 '노회'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 '노회'는 오늘날의 노회와 모든 점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원리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개혁파 혹은 장로파의 모든 교회는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몇 층의 대회의를 구성하여 모든 개교회를 결속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신약에 나타난 교회정치의 모형은 장로주의이다. 장로주의 정치는 세계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사도적 모형에 가깝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 개혁파 신학자들의 장로주의[2]

2)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장로교인'이라는 말은 정치형태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17세기 상반기의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3] 그후 그것은 영어권 개혁파 교회의 대부분의 명칭이 되었다. 교회 생활의 어떠한 모델도 이 장로주의의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형식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어떠한 정의도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로주의는 교회 생활의 고정된 양식이 아니라, 영속성과 다양성을 가진 발전 모델이기 때문이다.[4] 장로직의 임기와 같은 이 체제의 많은 특징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경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전형적인 해석자들은 장로주의에 대하여 네 개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들은 다양한 범위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하지(Charles Hodge)와 톤웰(James Henley Thornwell)은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교회의 정치형태와 실제 문제를 가지고 활발히 논쟁했으나, 일반적으로 장로주의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1) 하지는 장로주의를 다음과 같이 일반원리로 정의하였다.

첫째로, 교회의 모든 속성과 특권은 성령의 내주(內住)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에 그 속성들과 특권들이 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성직자에게만 내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power)는 백성에게 있다.

셋째로, 교회는 이 특권들을 행사할 때 성경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

Press, 1978), pp.147-156 참조.

3) G. D. Henderson, *Presbyterianism* (Aberdeen, Scotland: The University Press, 1954), pp.94ff.

4) Robert M. Kingdon, *Geneva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French Protestant Movement, 1564-1572*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7), pp.37ff.

원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직원과 조직의 양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교회는 규정된 원리들을 넘어서든지 충실하든지 아주 자유롭게 방법들과 기관들을 선택한다.

넷째로, 장로교체제의 기본원리들은, 그 첫째가 성직자의 동등이며, 둘째는 교인이 교회정치에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작은 부분이 큰 부분에 예속되고, 큰 부분이 전체에 예속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통일체라는 것이다.[5]

(2) 톤웰은 장로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장로교인이라는 말은 주로 교회정치 형태의 개념에서 특수한 용어이다. 이런 관계로 그 용어는 넓게도 적용되고 좁게도 적용된다. 넓게 적용되면, 그 말은 교회의 정치가 장로 이상의 직원들에게 위임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하면 목회사역의 공적인 동등성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고위성직자제도, 혹은 감독제도와 반대되는 것이며, 감독의 임명을 부정하는 모든 교파들을 의미한다. 교회의 치리자들의 공적인 동등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같이 본질적으로 장로교도이다. 한편 좁게 적용되면, 그 말은 교회의 정치를 오직 장로들로만 구성된 대표적 회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6]

장로교인이란 말을 정의하면서 톤웰은 장로교정치원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째 원리는 교회의 통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하나의 조직된 전체, 즉 거룩한

5) Charles Hodge, *Discussion in Church Poli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878), p.119.

6) John B. Adger and John L. Girardeau, eds., *The Collected Writings of James Henley Thornwell*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73) vol. 4:134-135.

보편적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형적 통일체를 실현하지 못하고, 무형교회와 일치하지 못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정체(政体)도 성경적이 아니다. 교회의 통일의 원리는 장로교 정치형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장로교 정치의 둘째 원리는 교회정치가 대표적 회의들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원리이다. 교회의 정치는 개인이나 회중이 아니라, 회의에 위임된다.

셋째 원리는, 대표적 회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신자들에 의하여 치리자로 자유롭게 선택된 장로들이라는 원리이다.

넷째 원리는, 권세는 주로 지체(body)에게 있으며, 조직된 회의들을 통하여 권세가 행사된다는 원리이다. 이 회의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인데, 그것들이 살아있는 권세를 나타낼 때, 이 회의들은 당연히 교회라고 불린다.[7]

장로주의 이해에 있어서 톤웰과 하지의 차이점은 정치형태 발전의 모호성을 반영한다. 톤웰은 성경에 기초한 정치형태를 선택하고, 하지는 일반적 원리로는 성경의 근거를 요구하면서도 세부사항들에서는 적극적인 성경적 보증이 없어도 용납한다. 톤웰은 역시 "조직된 역량을 가진 교회는 모든 영적 목적을 위한 단체"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단체요, 그 자체의 일을 하기 위해 독립된 부서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와 톤웰은 장로의 직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에게 있어서 장로는 신자들의 평신도 대표이다. 톤웰에게는 목사와 치리장로 모두 장로들이다. 장로는 본질적으로 치리장로이며, 여기에 설교와 교훈의 기능이 첨가된다. 톤웰의 강조점은, 치리장로는 목사 안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장로교회의 정치형태에 반영되었다. 장로의 성격에 관한 이와 같은 갈등은 적어도 칼빈 이후 정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장로교회의 정치형태의 모호성에 그 뿌리가 있다.

7) *Ibid.*, pp.134-139

(3) 20세기 장로주의의 두 역사가 있는데, 모팻(James Moffat)과 핸더슨(G.D. Henderson)이다.

모팻은 장로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장로주의는 장로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바 사도적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구성 원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a) 장로들의 동등성 (b) 신자들의 권리, 즉 그들의 대표 혹은 평신도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c) 교회의 통일성은 단순히 신앙과 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체로서의 교회의 공동의 권위를 표현하고 행사하는 교회회의들에도 있다.[8]

스코틀랜드의 핸더슨은 장로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장로주의는 엄격히 말해서 일정한 그리스도인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교회정치의 한 형태로, 그 주요 특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여러 형식의 치리회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이다. 모든 목사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며, 모든 장로는 토론과 투표에서 목사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9]

장로주의에 대하여 언급한 이상의 여러 정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성경의 권위

장로교회 정치형태의 한 가지 지속적인 특징은 그 호소를 성경의 권위에

8) James Moffat, *The Presbyterian Churches* (Toronto: Methuen Publications, 1928), pp.1-2.

9) G. D. Henderson, *Why We are Presbyterians* (Edinburgh: Church of Scotland Publications, n.d.) pp.82-83

둔다는 점이다. 장로주의는 성경에 규정된 교회정치의 형식이지만, 모든 것을 성경의 결정적인 권위에 호소한다.

칼빈은 분명히 지적하기를, 교회 질서(규칙, order)는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였다.[10] 칼빈과 밀접하게 관련된 갈리아 신앙고백(1559)도 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제도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선언한다.[11]

그러나 한편 칼빈은 교회정치 형태의 많은 세부 사항들이 반드시 성경적 보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 같은 것은 시대의 형편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한,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통적인 관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충분한 이유없이 경솔하고 갑작스럽게 개혁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그러나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라고 칼빈은 역설하였다.[12]

후기 칼빈주의자들과 장로교인들은 장로주의의 성경적 권위를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월터 트래버스(Walter Travers)는 교회정치 형태는 엄격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훌륭한 관리와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단이며, 이 권징의 규칙과 양식은 인간의 방법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다.[13]

10) *Inst.*, IV.3.1; IV.6.9
11)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Gallican Confession, Article 29, 3:376.
12) *Inst.*, IV.10.30.
13) Walter Travers, *A Full and Plaine Declaration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out of the Word of God and of the Declining of the Church of England from the Same*, 1617, p. 6.

2) 대표적 회의들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장로주의의 둘째 원리는 교회의 통일성인데, 이것은 회원들에 의해서 선택된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회의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라는 말은 지교회와 신자의 전 단체에게 주어진 말이다. 지교회가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이 보편적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는 지교회도 있을 수 없다. 장로교인은 조합교회주의(congregationalism)와 감독제도의 교회정치(episcopacy)를 둘 다 반대한다.[14]

칼빈은 개인들에 의한 치리를 반대하고, 공동의 치리를 위해서 마련된 회의들을 옹호하였다. 즉 목사 혼자만의 치리를 반대하고,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장로가 함께 치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의를 옹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자격자로 선택받은 자들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더욱 원하신다.

장로교회의 대표정치의 기본원리는 칼빈의 인간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15] 그것은 한편 어느 누구에게도 치리를 맡기기에 충분히 선한 사람이 없으며, 다른 한편 대중은 교회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결정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개인 치리의 허세와 횡포, 그리고 대중의 변덕과 무질서 두 가지 다 염려하였다.

3) 목사의 동등성

14)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장로교인들은 조합교회파를 반대하여 말하기를,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고 회중의 대표자가 된 조합교회 회의는 회중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위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 주장하기를, 지교회는 독립된 단위가 아니며, 여러 교회 회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로교인들은 또 감독제주의를 반대하여,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 회의들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이요 감독제도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15) John H. Leith, *op.cit.*, p.153.

장로주의의 셋째 원리는 목사직의 동등성이다. 이 원리는 아주 명백하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에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현재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권세, 혹은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 감독 혹은 장로는 만장일치로 교회를 다스리며 수고하였다. 아무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지 않았으며, 아무도 자기 동료 감독의 권세 혹은 권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 즉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눅 22:26)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였고, 교회 정치와 보존에 상호협력하며 도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총회를 함께 조직하고, 상의할 문제들을 총회에 상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간단히 말하면 할 수 있는 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아무런 혼란도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16]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갈리아 신앙고백과 벨직 신앙고백에서도 나타난다.

>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분 머리, 즉 오직 한분 주권적이며 보편적인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권세를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하여 권위와 주권을 주장하지 못한다.[17]

>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관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모두 유일한 보편적 감독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동등하게 소유한다.[18]

칼빈이 교회 정치에 관한 한, '교권제도'(hierarchy)라는 용어와 수위(首位, 주권, principality), 혹은 통치권의 구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16) Leith, *Creeds of the Churches,* Second Helvetic Confession, Chapter 18, pp.157-58.
17)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Gallican Confession, Article 30, 3:377
18) *Ibid*, Belgic Confession, Article 31, 3:422.

의심할 수 없다.[19] 칼빈은 초대교회의 정치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교회직책상의 어떠한 '지배력'이나 '허세', 그리고 횡포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4) 목사를 초빙하고,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

장로주의의 넷째 원리는 그들 자신의 목사를 초빙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적당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일반신자의 합의와 승인을 얻어서 임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는 다른 목사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회중이 경박함과 악한 의도나 무질서로 인해 탈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20]

칼빈이 일반신자의 권리에 대하여 강조한 점은 부분적으로는 기존입장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귀족정치적 성향 때문에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가끔 이 권리는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을 선택하는 일반신자의 완전한 권리는 후에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장로교인들에 의하여 충분히 강조되었다.

II. 개혁파 혹은 장로파 정체의 근본원리

개혁파 교회는 그들의 교회정치 체계(조직)의 모든 세칙(細則)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근본원리만

19) *Inst.*, IV.4.4.
20) *Inst.*, IV.3.15.

성경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세칙들을 하나님의 법규(*jus divinum*)로 말하지 않고, 이 정체의 일반적인 근본원리가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수의 세칙들이 편의와 인간의 지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구조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세칙들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의 보편적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적절한 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가장 중요한 근본원리는 영미(英美) 장로교회와 유럽의 개혁파 교회의 서로 다른 형식의 진술에서 볼 수 있다.

1. 영미(英美)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이 8대 정치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회의(1643~1649)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 남북전쟁 직후 장로교회 뉴욕총회(1788)에서 작성되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17년 총회에서 이 원리를 채택하였다.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의 각파들, 즉 합신측, 합동측, 고려측, 그리고 기장측은 이 8대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통합측은 6대 원리로 축소시켜 채택하고 있다.

(1)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와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신자는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21]

21) 이 첫째 원리 "양심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2절에서 인용되었다.

> 양심의 자유는 종교윤리에 어둡게 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밝혀진 양심이며, "착한 양심"이다(딤전 1:5,19; 3:9). 착한 양심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할 자유를 누린다. 사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명령이 바로 양심의 자유의 범위이며,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구속할 수 없다.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인격 속에 있는 사법기관이다.[22]

(2) 교회의 자유

양심 자유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入會規則), 직원과 회원의 자격, 그리고 교회정치의 모든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가 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보장하며 동일시할 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 이 원리는 교회설립에 관한 규례이며, 어는 교회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각자 독립하여 입회하는 규칙과 직원과 회원의 자격,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하는 권은 그 회가 스스로 주장하여야 한다.
>
> 누구든지 그 회에 입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입회하면 마땅히 입회규칙과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 입회 후 자기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대하여 권고할 것이요,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만 교회를 떠날 것이지 교회 분립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물러가지 전에 당회나 노회에 대하여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사건은 말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다[23]

22) 박윤선, 『헌법주석』 (서울: 영음사, 1983), pp.19-20.
23) J. A. 하지, 『교회정치문답』 (서울: 성광문화사, 1985), pp.269-270.

>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에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교회 역시 정부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독립의 개념은 신자 혹은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가나 교회가 누릴 각 분야의 주권, 즉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왕국과 세속국가가 서로 독립되어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마 22:21).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24]

(3)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그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직원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함과 성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와 행위를 바로 지키도록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직원들과 온 교회는 그릇된 교리를 믿는 자나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규례대로만 사역해야 한다.

> 직원의 직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 권징하는 것이다. 저들은 거짓 교리를 믿는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를 책망하며 출교하되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모든 경우에 성경의 법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권세는 직원과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대언하며 선포하는 것뿐이다.[25]

(4) 진리(신앙)와 행위의 관계

24) 박윤선, *op.cit.*, p.21.
25) 하지, *op.cit.*, p.21.

진리를 참으로 믿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된다. 진리는 성결한 행위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다(눅 6:44). 진리와 허위가 마찬가지라고 하며, 사람의 의사(意思)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장보다 더 악하고 모순된 주장은 없다. 신앙(진리와 화합된 마음)과 행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로회 정치의 제4원리는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이다. 진리는 사람을 선하게 하고, 진리의 증거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선행의 근본이 되고, 선행은 진리의 열매와 증거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같은 평면에 있다는 것과 "사람의 중심사상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본분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연구하며 굳게 지킬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26]

(5) 교회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신자와 교회가 서로 용납해야 한다.

> 교회의 직원들은 마땅히 신앙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성격과 주의가 선량한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진리와 규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 신자나 교회가 잘 포용해야

26) 하지, *op.cit.*, p.22.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직원은 엄격히 선정해야 한다. 종교개혁 때 신부였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당회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웅변이나 재간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그때에 개신교의 총회들은 이런 자칭 교역자들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교역자의 신앙의 건전여부는 일시적인 고백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 그가 받은 훈련과 시련, 또는 평소에 나타낸 사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교리에 불건전한 교역자들이 교회를 가르치면, 첫째로,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한다. 둘째로, 교회의 성결성이 저하된다. 셋째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신세계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27]

(6) 교회의 직원 선택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또는 선거와 위임의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선정 권한은 그 교회 자체에 있다.

신약교회의 직원은 교회자체가 선거한 것이 분명하다. 사도 맛디아도 회중의 천거를 통하여(행 1:22) 선택되었고(행 1:26), 일곱 집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택하도록 하였다(행 6:5~6). 그러므로 교회의 성직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이다. 투표권을 가진 회중도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고, 직원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직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3:1~13과 디도서 1:5~9에 있다.[28]

27) 박윤선, *op.cit.*, p.24-25.
28) 박윤선, *op.cit.*, p.25-26.

(7) 치리권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 자체로 시행하든지, 혹은 뽑아 세운 대표자들을 통해 시행하든지, 성경 말씀을 받들어 전달하는 의미만 가질 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어느 치리회든지 신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결정할 권리가 없고(막 7:9), 그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원리에서 지적하려는 것은, 교회의 치리권이 어디까지나 사역적이기 때문에, 자율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역해야 한다(갈 6:1).

교회의 치리권이 사역적 성격을 갖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직접상대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어떤 제사장제도)를 설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개교회가 외부의 어떤 교권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모든 교회들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정치가 전혀 없었다.[29]

(8) 권징

교회의 치리회가 위의 성경적 또는 합리적 원리들을 굳게 지키면 교회에 영광과 복을 가져온다. 교회의 권징의 수단은 반드시 영적 또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국법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치리자는 정부의 힘이나 그 어떤 폭력도 의뢰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효과는 권징시행의 공정함에 있고, 편견 없는 대중의 인정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아주심과 그의 복주심으로 말이

29) 박윤선, *op.cit.*, p.26-27.

암는다.

> 장로회 정치의 제8원리는 권징하는 일이다. 교회가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엄격히 시행하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세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결한 덕과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그러나 공평한 판단 그 자체는, 편견 없는 대중의 인정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아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는다.
>
> 교회의 권징은 국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만큼, 소송을 좇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의 참도리를 수호하며,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권징하며, 범죄자를 바로 잡는 데 있다.[30]

2. 화란 개혁파 교회의 정치 원리[31]

(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첫째로, 그는 유기적(有機的)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교회와 더불어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명으로 교회를 채우시며, 영적으로 교회를 지배하신다(요 15:1~8; 엡 1:10,22~23; 2:20~22; 4:15; 5:30; 골 1:18; 2:19; 3:11). 유기적 생명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그의 영적 몸인 무형교회(無形敎會)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유기적 의미뿐만 아니라, 권위를 갖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의미에서도 유형교회(有形敎會)의 머리가 되신다(마 16:18~19; 23:8,10; 요13:13; 고전 12:5; 엡 1:20~23; 4:4,5,11,12; 5:23,24). 유형교회에

30) 하지, *op.cit.*, p.26.

3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53), pp. 581-584 참조

대한 그리스도의 이 우두머리격(元首格)은 수난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통치권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다. (a) 그리스도는 신약의 교회를 설립하셨다(마 16:18). (b) 그리스도는 은혜의 수단들, 즉 말씀과 성례를 제정하셨다(마 28:19,20; 막 16:15,16; 눅 22:17,20; 고전 11:23~29). (c)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헌법과 직원을 주시고, 신적 권위로 교회를 옷 입히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행동할 수 있다(마 10:1; 16:19; 요 20:21~23; 엡 4:11,12). (d) 그리스도는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마다 항상 그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며, 또한 직원들을 통하여 행동하신다. 저들로 하여금 권위로 말하며 행동하게 하는 것은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마 10:40; 고후 13:3)

(2)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되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권위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무조건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권적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절대적 의미에서 율법이 되는 말씀이시다.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친히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이 통치에서 그는 교회의 직원들을 기구로 사용하신다. 그들은 절대적인 혹은 독립적인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파생적이며 사역적(事役的)인 권세를 가질 뿐이다.

(3)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權勢)를 주셨다

이 셋째 원리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먼저 이 권세를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난다. 로마가톨릭파와 감독파는, 교회의 일반적인 회원들과는 구별하여 세운 계급인 직원(職員)들에게만 이 권세를 맡기셨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독립파는, 이 권세는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으며, 직원은 다만 그 전체의 기관(器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자의 중간을 대표하는 찬성할 만한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 전체에게, 즉 일반회원과 직원들에게 다같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직원들은 이에 더하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추가적인 권세를 받았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기원적(起源的)인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자이지만 단순한 대리자만은 아니다.

"모든 교회 권세는 제1차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 자체에 있고, 제2차적으로, 혹은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다."

(4) 그리스도는 이 권세가 대표적 기관들에 의하여 특별히 행사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 전체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동시에 또한 이 권세는 교리와 예배와 권징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대표적 기관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또는 특수하게 집행되도록 하셨다. 교회의 직원은 회중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택된 회중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권위를 회중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중의 선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소명(內的召命)을 다만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으며, 또한 주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대표자로 불리는 것은 회중에 의하여 직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뿐, 그들의 권위가 회중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회중의 요구를 수행하는 대리자 혹은 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는 치리자(治理者)인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여,

중요한 문제에서 동의와 승인을 구할 의무가 있다.

(5)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치리회에 있다

개혁파 혹은 장로파 정체(政體)의 근본원리 중 하나는, 교회의 권세 혹은 권위가 총회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총회로부터 그 권세가 나와 2차적으로 지교회의 치리회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그것은 그 근원적인 자리를 지교회의 당회에 두고, 여기서부터 노회, 대회, 혹은 총회로 확대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파 정체는, 항상 한 교파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연합된 까닭에 자치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히 여기며, 그 직원들을 통하여 자체의 내부적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동시에 이 정체에서는 지교회가 공통적인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다른 유사한 교회들과 연합하며, 따라서 교리적, 재판적,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약정하는 보다 큰 조직체를 형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큰 조직체는 지교회의 자치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의 성장과 안녕을 증진시키며,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교회의 통일성을 보다 충분히 나타내주기도 한다.

3. 칼빈의 교회정치 형태[32]

16세기 역사적 상황은 개혁파 교회에 새로운 교회 생활의 모델을 창출해내는 데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였다. 대부분의 루터파 공동체는 중세교회의 구조를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았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교리상의 개혁은, 특히 제네바의 개혁은 옛 교회구조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32) John H. Leith, *op.cit.*, pp.144-147 참조.

화란, 그리고 영국에서 개혁파 공동체는 자주 기존질서를 반대하여, 교회생활의 모형을 자유롭게 만들어 냈다.

칼빈은 교회정치 형태에 대하여 어느 다른 개혁자들보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그가 신학에 창조적으로 공헌한 것 중의 하나는 사도신경의 네 부분을 그의 신학의 기초로 삼은 것인데, 그는 네 권으로 된 기독교강요라는 방대한 책에서 교회, 성례 그리고 국가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이 설교는 하고 있었으나, 교회조직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일했다. 옛것은 거절되었으나, 아직 새것은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성경의 교훈을 표현하고, 신앙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의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두 쏟았다. 그의 목회사역의 직접적인 구역은 제네바(Geneva)였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법령」(the 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작성하였는데,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법령은 네 종류의 교회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믿었다. 첫째로, 목사는 말씀전파와 성례의 시행과 교훈, 그리고 장로와 함께 권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는다. 둘째로, 교사는 "신자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자이다. 그는 목사의 직분과 가장 가까운 직분을 가진 자로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을 맡는다. 셋째로, 장로는 목사와 함께 "모든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는다. 넷째로, 집사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구제와 위로의 사역을 담당한다.

(1) 이 정치형태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칼빈이 목사의 성실성과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성실성과 능력은 생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씀 전달의 재능을 조심성 있게 심사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 칼빈은 목회사역에 대한 매우 고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끔 목사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의의는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목사를 교회의 신학자로 보고, 설교와

예배 인도와 교훈과 양떼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기능은 교회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기능의 의의는 목사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

(2) 둘째로 두드러진 업적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이다. 당회의 책임은 도덕, 예배 참석, 그리고 성경지식 등 여러 분야에서 회중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했다. 칼빈은 이를 위해 싸웠고, 장기간(1541~1555)의 노력 끝에 국가로부터 당회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했다. 수세기 이후, 특히 지난 세기에,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회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띤 교회생활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만 했다. 여러 교파들이 생기고 세속문화가 발전하면서 도덕과 공중생활을 권징하는 당회의 힘은 약화되었다.

칼빈은,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권징은 본래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교회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권징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다시 확인되기 위함이다. 둘째 목적은 악이 선을 부패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셋째는 범죄한 자가 전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33]

칼빈은 분리된, 그리고 순결한 교회를 추구하던 재세례파의 엄격한 권징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징에 좌우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의 특징은 훈련된 기독교 공동체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

(3) 칼빈의 정치형태의 셋째 특징은 요리문답의 교육이다. 칼빈은 신자는 마땅히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또한 왜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지는 성례 참여와 충실한 교회생활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질서 잡힌 교회라면 규칙적인 요리문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정치형태의 넷째 강조점은 교회의 연민(구제) 사역을 맡은 집사의 직분이다.[34] 칼빈이 있던 제네바에서는 구걸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지

33) *Inst.*, IV.12.5.

못하였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축제일들을 많이 폐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동체들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였다. 칼빈 자신도 적절한 고용과 가정의 난방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칼빈은 교회의 구조를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직무상의 질서, 즉 집사직을 두기로 하였다.

(5) 다섯째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점이다. 교회의 모든 형식적인 표지와 모든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트란테루드(L.J. Trinterud)는 칼빈의 교회 정치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칼빈의 교회정치관의 주된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혹은 지체이며, 모든 다른 회원들은 그 밑에서 동등하다. 목회사역은 온 교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신 뜻에 따라 여러 직책으로 나뉜다. 직분을 맡은 자는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택함을 받아 그들의 대표자로 일한다. 교회는 교회의 대표로 선택된 직분을 맡은 자들, 즉 목사와 장로의 회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도를 받는다.[35]

Ⅲ. 교회의 정치

1. 교회의 직원들

(1) 교회조직에는 그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직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고귀한

34)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No.1(February 1971), pp.50-69

35) From, "Presbyterianism" in *Encyclopaedia Britanica*, 14th edition, 1971, 18:467

영예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직무상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만 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 교회직원은 일반적으로 비상직원(非常職員)과 통상직원(通常職員)으로 구별된다.

비상직원은 사도시대 교회에만 존재한 일시적인 직원들로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이전에 교회가 전혀 없었던 곳에 교회가 형성되는 동안, 혹은 적어도 교회가 모세시대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는 시기 동안, 교회의 지속을 위해서 세워진 직원들이었다.

한편 통상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가리키며, 일시적인 비상직원과는 달리 항상 존재하게 될 항존직원(恒存職員)이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는 이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통상적이며 영구적인 직원들은 감독들, 혹은 목사들과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고 하는 교인 대표자들과 집사들이다"(3장 2조). 이 직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하고 교육하며 신령한 가운데 치리하는 것과 구제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에 유대교의 각 회당에는 회당장과 그를 보조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기독교회가 설립되자 그것을 모방하여 직제(職制)를 설립하였다.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 제도를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도들의 전도로 유대교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에는 회당을 예배당으로, 그리고 회당장을 장로로 불렀다. 회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설립할 때에는 목사와 장로 몇 사람과 집사 몇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36]

(2) 신약성경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장로의 자격이다. 사람에게 장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들은 반드시 직원들에 대한 성경적 표준에서 증명된 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36) 하지, *op.cit.*, pp.40-41.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신 1:13).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 18:21)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자격 조건은 이 직책을 맡을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표준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딤전 3:2)라고 가르친다. 이 점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다.

장로의 자격은 인간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는 그의 도덕적 행위요, 둘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요, 셋째는 그의 가정생활이다.

1) 장로는 항상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직원이 받는 존경은 어느 다른 것들보다도 좋은 성격의 모범에 있다. 더욱이 그의 도덕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경건생활로 감화를 주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딤전 3:2; 딛 1:6).

2) 장로는 역시 반드시 기독교 교리에 정통해야 한다. 그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신앙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오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로로 봉직하려면 예리한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이단을 적발하고 그들을 뿌리부터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건전한 가정생활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전 3:5). 자기 가정을 경건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치리(治理)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공중의 신뢰를 받기에 부적당하다.

4) 장로를 위한 이 모든 기본 자격 조건들 외에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원리이다. 장로가 될 사람은 초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교회의 직원으로 서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그것은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자격들이 교회 앞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의 원리는 특별히 오늘날의 목사 후보생 훈련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은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빨리 목회사역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한 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추대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항상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정치와 비교해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백해진다. 시민정부에서는 자격이 미흡하면, 그는 그 직책에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관리의 자격은 국가 기구에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하급 관리이든, 어느 누구도 먼저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직책에서 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장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역사적으로 장로주의에는 치리장로와 교훈하는 장로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교회정치에서 한 장로가 다른 장로를 지배한다든지, 또는 목사가 다른 장로의 전횡적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교회의 장로는 그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직무가 나누어 있지만, 장로 각자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회의에서 심사숙고하여 투표로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문제는 교회회의에 의한 정치에서 더 충분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3) 유대교 회당 체제에도 이와 유사한 직원들에 대한 지시가 있지만, 사도행전 6:1~6에서 신약 최초의 집사 임명이 발견된다. 이 구절들은 그

직책의 성질과 의무를 보여준다.

과부들의 궁핍의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주요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계급의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행 6:3)이어야 한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3:8~13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더 상세한 목록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조건의 의미를 공들여 만들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의 주요 초점은 정직과 가정생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사를 위한 표준은 높지만, 그러나 그들은 장로를 위하 표준처럼 엄격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만, 장로처럼 반드시 교리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이다(딛 1:9). 이 차이는 장로와 집사의 기본적인 구별을 의미한다.

장로에게는 감독과 교훈의 의무를 포함하는 다스리는(치리) 과업이 주어지지만, 집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장로의 지시에 따라 봉사하는 종속 계급의 직원이다. 집사는 장로들을 도와 특별히 교회의 일시적인 일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집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가난한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의무에는 심방이 들어있고, 교회의 재정 문제의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일이 들어있다. 프린스턴신학교의 밀러(Samuel Mill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바 있다. "집사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은 모든 재정 책임자 혹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재정적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삼을 수 있다"[37].

물론 집사는 이 문제에서 장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로들이 교회 재정 문제와 같은 많은 소모적인 일에서 구출될 수 있다면, 엄격히 말해서 장로의 직책에 속하는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원리는 역시 교회의 상급 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톤웰(James Henley Thornwell)은 주장하기를, 집사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서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역량에서 집사는 회의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하고 지불하며, 상급회의의 관할하에 여러 가지 선교활동을 돌볼 수 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정치를 확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두 직원이 있는데, 장로와 집사이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며, 양무리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많은 목양(牧羊)의 의무를 다한다. 한편 집사는 하위계급의 직원으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되, 장로의 지시에 따른다. 주로 집사는 회중의 가난한 자를 돌보며, 장로들을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개혁파 교회의 전통을 항상 집사직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기를 주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집사직은 장로주의의 원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유진 하이드만(Eugene Heideman)은 그의 개혁파 정치형태 연구에서, 칼빈은 집사직이 교회적 의의와 함께 문화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그는 개혁파 교회 전통에서 만발한 집사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37) Samuel Miller, *The Ruling Elder*, p.237.

> 집사직은 하나님의 의를, 즉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도우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그리고 사회적 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고 개혁파 전통은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의연금 모금과 자선사업에서 집사직은 다른 직원들보다 낮은 수준의 직원이 아니며, 정당하게 이해될 때, 그것은 교회 직원들 중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인 것이다.[38]

(4) 교회회의들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와 다른 직원들을 안수(按手)하는 일이다. 이 회의들은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받은 사역적 은사를 인정하였다(딤전 4:14). 반대로 바울은 교회의 일을 그르치는 "흉악한 이리" 같은 장로들을 경고하기도 하였다(행 20:29,30). 교회회의는 그런 침입자를 막아 교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임직될 후보자의 소명과 시취가 있은 후, 임직식이 거행되는데 임직식에는 반드시 안수가 수반한다. 이것은 당회 혹은 노회의 행위로써 임직자의 성직에 대한 소명을 공적으로 승인하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시대에는 임직과 안수가 병행되었다(행 6;6; 13:3; 딤전 4:14; 5:22). 안수는 사도의 모범과 조화되며 적당하며 합법적이다.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임직자가 어떤 직책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안수가 단순히 임직자가 교회의 사역적 직책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할 뿐이라고 말한다. 안수는 성경적 의식이며 전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장로교회는 그것을 임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38) Eugene Heideman, *Reformed Bishops and Catholic Elders*, p.124. See article on the importance of the deacon by John L. Girardeau in *Souther Presbyterian Review*, Vols. XXX, XXXI, XXXII.

2. 교회의 회의들

개혁파 교회의 정치는 작은 규모나 혹은 큰 규모의 교회회의 제도, 즉 대의정치제도가 특징이다. 이 회의들은 당회(堂會, consistory, session), 노회(老會, Classis, presbytery), 대회(大會, synod), 그리고 총회(總會, general assembly)로 되어 있다. 당회는 지교회(支敎會)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에 있는 각 지교회의 목사 한 사람과 장로 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한국교회에는 아직 대회 조직을 가진 교단은 없지만 대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총회도 역시 각 노회에서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나, 각 대회에서는 파송되지 않는다. 정당한 정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조직하고, 목사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인이 택한 치리장로와 함께 다스리며, 전체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밝히 가르치는 정치인데, 이것이 장로회 정치이다.[39]

(1) 개혁파 교회는 정치(政治)가 단일 감독이나 치리장로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회중에 의해서 시행되는 교회들과는 다르다. 즉 장로나 목사 또는 감독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한 사람이 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회중정치(會衆政治)도 용납하지 않는다. 개혁파 교회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치리하는 장로를 택하여, 그로 하여금 목사와 함께 교회정치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사도들은 직접 명령하는 식으로 교회를 치리하지 않고 당회의 훌륭한 장로제도에 따라 다스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설립한 여러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 예루살렘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다(행 11:30).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 때 조직한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행 14:23). 에베소(행

39) 하지, *op.cit.*, p.93.

20:17)와 빌립보(빌 1:1)에서는 분명히 장로들이 치리하고 있었다. 목회서신들은 장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딤전 3:1~2; 딛 1:5,7). 더욱이 그들은 항상 복수로 언급된다(고전 12:28; 딤전 5:17; 히 13:7,17,24; 벧전 5:1)

(2) 장로는 특별히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로 회중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성경은 장로 선택 문제에서 회중에게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동시에 주님께서도 친히 이 치리자들을 세우셔서 회중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필요한 권위로 그들을 옷 입히셨다(마 16:9; 요 20:22,23; 행 1:24,26; 20:28; 고전 12:28; 엡 4:11,12; 히 13:17). 회중에 의한 선택은 다만 주님의 내적 부르심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장로는 회중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그 권위를 회중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장로는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며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

(3) 개혁파 교회의 정치는 지교회의 자치권(自治權)을 인정한다. ① 모든 지교회는 교회정치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완성적인 교회이다. 각 지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종류의 지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모든 지교회는 인근 교회들과의 적절한 연합이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지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연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회나 대회를 상회(上會)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대회의들이나 혹은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회의들이 당회의 고유한 권세보다 더 넓은 규모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회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③ 대회의들의 권위와 특권은 당회의 권리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 회의들은 당회의 헌법상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지교회와 그 회원들을 주관하지 못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지교회의 내정을 간섭하지 못한다. 교회들이 서로 연합할 때에는 교회헌장(church order)을 작성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선을 명시한다. 이것은 대회의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지교회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노회나 총회가 마음대로 어떤 특수한 교회에 무엇이든지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로마교회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지교회의 자치권은 서로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는 그 교회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는다. 교회 헌장은 일종의 헌법이며, 이것은 그 당회를 대표하는 모든 지교회에 의하여 엄숙히 서명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들의 집합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라도 상호간의 일치와 공동의 이익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지교회들은 교회 전반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가끔 자신을 자제하도록 요구받는 때가 있기도 하다.

(4) 성경은 지교회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대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또는 그와 같은 연합의 실례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보아 그와 같은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이며, 이 유기체 안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관계를 갖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영적인 몸이다. 성경은 교회를 영적인 몸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유형적인 몸, 성령의 전,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도 가르친다. 이 용어들 하나하나가 다 유형적인 통일을 지적하고 있다. 회중파, 독립파 또는 비교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ἐκκλησία(교회)라는 말은 유형교회를 순수한 지교회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교회를 가리키는 단수어로 사용되었다(행 9:31; 고전 12:28; 10:32).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2~50과 에베소 4:4~16에서, 교회를 묘사할 때에도 역시 교회의 유형적인 통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더욱이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는 하나로 통일을 이룬 일부 지교회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회의의 실례를 보여준다. 이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노회나 대회 또는 총회의 본보기는 되지 못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대회의의 한 실례였으며, 단순히 충고자의 자격으로 말하지 않고 권위로 말한 회의였다.

(5) 대회의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대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는 것은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회중의 직접적인 대표자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에 대표자로 참석하며 또한 대회나 총회의 대표자가 된다. 총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회중에게서 멀리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교회의 통일이나 질서 유지나 또는 그 일들을 효과 있게 하는 데 어렵게 할 만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이들 대회의의 교회적 성격을 명심해야 한다. 이 회의들은 교회회의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적, 산업적 또는 정치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교회적 문제들, 즉 교리와 도덕, 교회 정치와 권징,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보존하는 데 관계된 문제들만 다룬다. 예를 들면, ① 성질상 소회의의 영역에 속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지교회에서 한 신자가 사업상 자기를 속이고 횡령한 다른 신자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고 상상해보자. 고린도전서 6:5~6에서 바울은 불신 법정에서 신자들끼리 소송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꾸짖고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 사이의 쟁의(爭議)가 세상 법정에 올라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잘 해결된다면, 그것은 지혜와 정의로 문제를 판단하는 자격 있는 장로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회는 결정 단계에서 반드시 성경적 조사 원칙을 지키며 신중히 조사하고 양쪽 이야기를 다 충분히 들어야 한다. 신명기 19:15~18은 이런 조사 원칙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일 당회가 그 사건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 없으면 대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위탁은 당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고, 혹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호소를 근거로 하여 할 수 있다.

모든 체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가끔 잘못이 생기게 마련이다. 독립교회의 경우 지교회 수준에서 잘못을 저지른 개인은 재판을 위한 호소의 길이 없으나, 장로교 정체에서는 교회정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호소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신앙고백, 교회헌장, 교회의식과 같은 문제들은 교회 전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상 대회의의 영역에 속한다. 사도행전 15:1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쳤다. 논쟁의 결과 안디옥 사람들은 이것은 지교회의 일시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어, 거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론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회의는 권위적인 작정을 결정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행 16:4).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지교회 이상의 교회로부터 온 장로들로

구성된 대회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루살렘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다른 장로들과 상관없이 다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도들이 만일 사도적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면 누가 감히 결정된 그 문제를 의심하였겠는가? 더욱이 사도들까지도 이 교회회의의 소집에 순복하였다.

③ 예루살렘 회의의 셋째 특징은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결정이라는 점이다. 이 회의에서 공식화된 "작정"(decree)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 이 교리적 공식화는 교회를 위한 통일의 가시적 표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중에 대하여 지배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⑥ 대회의들은 당회에 주어진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대표하지 않는다. 개혁파 교회는 당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회의의 권위는 당회의 권위보다 정도에 있어서 더 크고, 정도에 있어서 보다 넓을 뿐이다. 교회의 권세는 당회보다도 이 회의에서 더 크게 표현된다. 이것은 마치 사도적 권세가 한 사도보다도 12사도에게서 더 크게 표현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열 교회는 한 교회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권세의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회의들의 권위는 단 한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 전체에게 미친다. 따라서 대회의의 결정은 비중이 크므로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다. 가끔 이 회의의 결정은 충고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상은 독립파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결정들은 단순히 충고적이라고 명백히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권위적이다. 그리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건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구속한다. 그리고 이 결정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만 그 구속을 멈추게 된다.